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100170-10

www.moe.go.kr

2026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CONTENTS

제1편

제도 개요 / 1

- I.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개요 3
 - 1.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3
- II. 업무처리 프로세스 6
 - 1. 개괄 6
 -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7
 - 3. 시·군·구읍·면·동, 교육청·학교의 역할 11

제2편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 13

- I. 교육비 신청 및 교육비 납부유예 14
 - 1. 신청 14
 - 2. 접수 18
 - 3. 교육비 납부유예 18
- II.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20
 - 1. 보장의 단위 20
 - 2. 선정기준 및 교육비 지원 내용 22

제3편

조 사 / 31

- I. 조사개요 32
 -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32
 - 2. 조사의 종류 33
 - 3. 조사 제외 대상자 38
 - 4. 자료제출 요구 38
 - 5. 조사수행 주체 40
 - 6.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41
 - 7.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41
- II. 소득조사 43
 - 1. 소득의 의미 43
 - 2. 실제소득의 범위 43
 - 3. 소득 산정기준 및 소득의 유형별 조사방법 43
- III. 재산조사 44
 - 1. 재산의 종류 44
 - 2. 재산의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45
 - 3.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45
- IV. 소득인정액 산정 48
 - 1.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48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48



제4편

심사 및 사후관리 / 49

I. 심사 및 통지	50	IV. 보장비용의 징수	62
1. 개요	50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62
2. 조사결과 송부	50	2. 정리보류	64
3. 심사 및 통지	51	3. 소멸시효	65
4. 학교장 추천	53	4. 고발조치	65
5. 교육비 지원의 실시	53	5. 부정수급 신고 처리 절차	65
6. 교육비 지원의 중지(신청 취소·철회)	54	V. 개인정보 보호	67
7. 학교 변동사항 관리	55	1. 개 요	67
II. 이의신청	56	2. 주요 노출 사례	67
1. 개 요	56	3. 조치 사항	68
2. 이의신청 신청방법	56		
3. 이의신청 절차	56		
4. 이의신청 처분의 효력	59		
5. 이의신청 서식	59		
III. 변동 및 사후관리	60		
1. 개요	60		
2. 변동사항 확인대상	60		
3. 변동사항 확인방법	60		
4.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61		

붙임

참고 자료 / 69

1.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 ..	70
2. 교육비 신청 관련 서식	87
3. 교육급여 사업과의 관계	115

2026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주요 개정 사항

분 류	2025년도	2026년도				
제2편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I 교육비 신청 및 교육비 납부유예 (14p)	○ 집중신청기간 － 2025. 3. 4.(화) ~ 3. 21.(금) ○ 집중신청기간 － 2026. 3. 3.(화) ~ 3. 20.(금)					
II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24p)	○ 중위소득 기준 환산표 (단위 : 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2026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고시)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소득 인정 액	중위소득 50% 이하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중위소득 52% 이하	2,183,632	2,786,699	3,377,264	3,929,494
		중위소득 60% 이하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중위소득 80% 이하		3,359,434	4,287,229	5,195,790	6,045,375	
II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24p)	－ 입학금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 하는 입학금 전액		－ 입학금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 하는 입학금 전액 * 고등학교 1학년 1분기에 신청한 경우 에만 지급			
II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29p)	－		※ 학교장 추천자가 관내 타 학교로 전출입 시 전입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다시 받아 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학교는 학교장 추천 지원 결정시 이를 사전에 학부모에 게 공지 필요			
II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30p)	－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제16조(교육 비 지원)에 근거하여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피해자 중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 과서·도서구입비) 지원사항 반영			



제1편

제도 개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요약자료

○ 사업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등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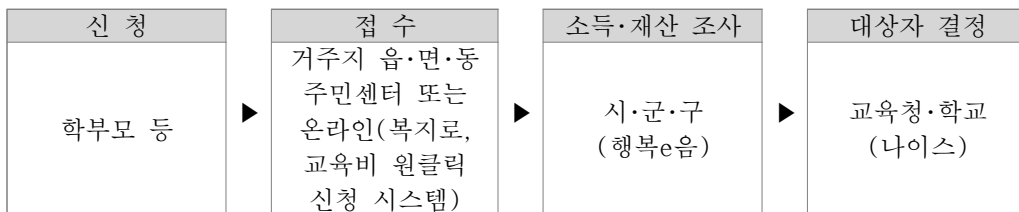
※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이 상이하나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이하 가구

○ 지원 내용(4대 교육비)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 시·도교육청별 지원 내용 및 대상이 일부 상이

○ 지원 절차



I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개요

1.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 업무 처리 개요

구 분		내 용
지침적용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중·고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12·29여객기참사(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피해자인 학생 ※ 시·도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학생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 온라인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 구비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26년 집중신청기간	○ <u>2026. 3. 3.(화) ~ 3. 20.(금)</u>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교육급여와 동시 신청 유도
	유의사항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미지원) ○ 분교에 재학 중인 경우, 분교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구 분		내 용																															
신청취소 (철회) 및 중지	신청취소 (철회) 및 중지	○ 주민센터에 신청취소(철회) 요청(확인조사 대상자 포함) － 주민센터는 신청 접수 후 교육청에 통보 ○ 교육비 지원 중지는 학교에 직접 요청																															
선정 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시·도교육감이 교육비 지원항목별로 기준 결정 (단위 : 원) <table><tr><th colspan="2">가구원수</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r><tr><td rowspan="4">소득 인정액</td><td>중위소득 50% 이하</td><td>2,099,646</td><td>2,679,518</td><td>3,247,369</td><td>3,778,360</td></tr><tr><td>중위소득 52% 이하</td><td>2,183,632</td><td>2,786,699</td><td>3,377,264</td><td>3,929,494</td></tr><tr><td>중위소득 60% 이하</td><td>2,519,575</td><td>3,215,422</td><td>3,896,843</td><td>4,534,031</td></tr><tr><td>중위소득 80% 이하</td><td>3,359,434</td><td>4,287,229</td><td>5,195,790</td><td>6,045,375</td></tr></table>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중위소득 52% 이하	2,183,632	2,786,699	3,377,264	3,929,494	중위소득 60% 이하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중위소득 80% 이하	3,359,434	4,287,229	5,195,790	6,045,375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중위소득 52% 이하	2,183,632	2,786,699	3,377,264	3,929,494																										
			중위소득 60% 이하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중위소득 80% 이하	3,359,434		4,287,229	5,195,790	6,045,375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자동차(월 100%/3)																																	
학교장추천 기준	○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 경제적 곤란 여부를 서류 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학교장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신청·접수, 선정, 지원은 학교에서 수행																																
기타 기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2·29여객기참사(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피해자인 학생																																

구 분		내 용
조사	조사내용	○ 시·군·구는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처리기한	○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심사	심사내용	○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감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심사
	처리기한	○ 시·군·구 조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교육비 지원	종류 및 지원액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교재비 등 포함)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 지원액 등은 시·도교육청별 상이할 수 있음
	중복지원 제한	○ 고교 학비 - 교육급여, 한부모 등 법령에 의해 별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 가구원 중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준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지원기간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 ※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 지원

II

업무처리 프로세스

1. 개괄

구 분	업무처리 절차	수행주체
교육비 납부 유예	○ 법정자격대상자의 교육비 납부유예 ○ 신입생 예비소집 시 법정자격 증명서 제출자 교육비 납부유예	학교(교육청)
↓	↓	
교육비 지원 신청	○ 상담 시 교육비 지원·교육급여 동시 신청 안내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포 누리집) ○ 신청서 등록·접수 ○ 조사 요청	지자체 (읍·면·동)
↓	↓	
조사	○ 소득·재산조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조사에서 제외(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 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금융재산포함)요청 → 공적자료(금융재산포함)자동반영 →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처리 - 단, 타보장과 같이 신청된 경우 통합조사팀에서 조사업무처리 ○ 보장결정 요청	지자체(시·군·구)
↓	↓	
심사	○ 심사, 통지	학교(교육청)
↓	↓	
지원	○ 교육비 지원(감면 등 포함)	학교(교육청)
↓	↓	
변동관리	○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확인조사(연 1회)	지자체(시·군·구)

※ 학교장 추천 절차는 제2편 II.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참조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신규 신청자

(1) 신청 (읍·면·동 또는 온라인)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신청서의 '선택적 동의, 유의 및 안내사항'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등을 행복e음으로 조회하여 반영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한 경우, 상담과정에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신청서에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 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함

*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간주함을 안내(신청서 3쪽 '선택적동의' 참고). 단,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만 신청 가능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고지(교육비 지원자로 이미 선정된 자가 재신청하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지원항목이 탈락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 고지)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임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회원권 등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
 - *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제공을 위한 동의서 내용을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하고, 동의할 경우 동의서 징구. 단,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 [서식12]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징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 제출 서류 안내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무료임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인이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각종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도록 안내

○ 예외 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서 등록 후 행복e음(또는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 행복e음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 신청·접수시 구성된 조사가구정보로 조사업무(공적자료요청 및 반영, 소득 인정액 계산)가 자동처리 되므로, 정확한 조사가구구성을 위해 가족관계 확인에 철저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록
- 온라인 신청 건은 접수확인 처리 후 행복e음(또는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이관

(2) 조사 (행복e음 또는 통합조사관리팀)

○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 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 (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 조사결과 반영

- 신청서 접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 금융재산 조회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 신청서 및 소득인정액 정보를 행복e음에서 나이스로 전송

※ 시스템 자동 처리 범위

-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한 경우
 - 공적자료 조회 요청 및 조사결과 반영, 조사결과 나이스 전송을 행복e음에서 자동 처리
 - 교육급여 등 타 서비스와 교육비 지원을 같이 신청한 경우
 - 행복e음에서 자동 처리 불가 (기존과 동일하게 수작업 필요)
-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도 행복e음 자동 처리 불가

(3) 심사 및 결과 통지 (학교, 교육청)

- 각 교육비 별로 심사 후, 수급자에게 결과 통지

(4)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수행하되, 교육비 신청서 기재 사항, 소득·재산 조사 관련 등의 신청은 읍·면·동(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처리

나. 기존수급자 변동분 처리 절차

(1)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시스템)

- 가구원의 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을 통해 알림 기능 제공

* 거주지 변동사항, 가구원 변동사항은 매일 알림

(2)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재산 변동
 -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에 자동반영됨

○ 가구원 인적변동

- 거주지 변동(전출·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시 알림
- 전출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장가구 재구성

※ 보장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시 처리방법

구분	구 거주지에서 할 일	신 거주지에서 할 일
가구 전체 거주지 변경	① 시스템에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② 원본 서류 보관 (필요시 스캔본 송부)	①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②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가구원 일부 거주지 변경	① 시스템에서 수급자의 전출시에만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② 수급자의 전출시 전출통보 ③ 원본 서류 보관 (필요시 스캔본 송부)	① 시스템에서 수급자(학생)의 전입시 자동처리 후 알림 ②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 변동적용

- 소득·재산 변동 및 가구원 인적변동은 행복e음에서 반영 처리하나, 자격은 변동
처리하지 않음
- 확인조사 시 별도 가구원변동을 처리하지 않기 위하여 전출입 등으로 인지된
시점에 인적변동 반영 처리

다. 기존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1)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통합조사관리팀)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행복e음에 의해 자동 알림
-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므로, 별도의 재책정 처리는 불필요함
- 단 교육비 지원기준이 다른 시도 소재 학교로 전출 시, 해당 시·도의 기준에 따라 지원(학교)

(2) 지원중지 결정·통보 (학교, 교육청)

- 학생이 자퇴·퇴학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나이스-행복e음 연계를 통해 중지 이력 통보
 - 휴학한 경우는 보장대상자 자격 유지 (교육비 지급만 중단)
 - 자퇴·퇴학한 학생이 재입학을 하는 경우, 교육비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단, 학생이 사망한 경우는 행복e음에서 나이스로 지원 중지 자동 통보

3. 시·군·구·읍·면·동, 교육청·학교의 역할

가. 추진방향

- 교육비 신청·접수, 소득·재산 조사 업무 위임에 따른 지자체 업무 부담 최소화
- 원활한 교육비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나. 업무분장

주 체	업무 담당
시·군·구	○ 지자체 업무 담당자 교육 ○ 읍·면·동 근무 인력 지원 계획 수립·추진 ○ 소득·재산 조사, 변동·확인 조사 수행 ○ 소득·재산 조회 관련 민원 상담 ○ 소득·재산 관련 부정 수급 조사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비 신청서 검증·접수 (온라인 신청 포함) ○ 교육비 지원 신청 절차 상담 ○ 소득·재산 조회 관련 민원 상담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 사업 예산(읍·면·동 지원 예산 포함) 편성·집행 ○ 학부모·학생·교직원 대상 홍보 및 교직원 교육 ○ 지역 상담센터 운영 및 기관 문의 대응(시·군·구, 읍·면·동, 학교 등) ○ 단위학교 지도·감독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지원·중단 (교육정보화 지원) ○ 부정 수급 신고 접수, 처리 결과 관리
각급 학교	○ 학부모·학생 대상 홍보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지원·중단 ○ 학교장추천 대상자 선정·지원·중단 ○ 교육비 지원 절차 상담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관련 민원 상담



제2편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I

교육비 신청 및 교육비 납부유예

1. 신청

가. 신청 주체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 온라인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
 - 가구원(학생 포함)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 시, 가구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함 (II.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참조)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 별로 신청
 - 사생활 보호 대상자인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교육비 신청
- 신청 간주 대상자
 - '25년 교육비 지원자(확인조사 대상자)는 '26년 교육비 신청 불필요
 - ※ 제3편 2. 조사의 종류 참조
 - ※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행복e음에서 조회 가능
 - 확인조사 대상자의 가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으로 처리

나. 신청 기간 및 장소

- 집중신청기간 : 2026. 3. 3.(화) ~ 3. 20.(금)
 -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교육급여와 동시 신청 유도
-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본재산액 적용
- 온라인 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 부모, 학생이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 ※ 19세 이상의 형제를 가구원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단, 가구원(학생 포함) 중 외국인이 있거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다.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별도서식 4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무료임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시 임차·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법원 인정 사채를 기재(입력)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 후 시스템에 업로드

라. 처리기한

- (시·군·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교육청·학교에 조사결과 통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 (교육청·학교) 시·군·구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교육비 신청자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용 통보

마. 신청시 안내사항

- 처리기한 : (시·군·구)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교육청·학교) 30일
- 제출서류 안내
 -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심사결과 통지 방법 : 학교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
- 신고의 의무
 - － 세대 구성의 변동사항(이혼, 재혼, 출생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조사 협조의 의무
 - －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할 수 있음을 안내
- 동의사항 확인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고지사항 안내
 - －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 기타 교육비 지원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 수집된 정보는 복지 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 － 온라인 신청 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접수 가능

바. 신청의 취소(철회)

- 신규신청자와 신청간주자(확인조사 대상자)가 '26년 교육비 지원의 신청 취소(철회)를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취소(철회)를 요청
- 구비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서 [서식 10]
- 안내사항
 - 교육비 지원받는 학생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신청취소(철회)를 희망하는 학생 모두 기재하여야 함
 - 신청취소(철회)시 4대 교육비(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비) 등이 지원되지 않음을 안내
 -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이 다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함을 안내
- 처리 절차
 - 신규신청자의 신청 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주민센터는 행복 e음에서 신청 기각 또는 조사 종결 처리
 - 신규신청자의 신청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되었거나, 신청간주자인 경우, 시·군·구·주민센터는 신청 취소(철회) 요청서를 접수하고 학교 및 교육청에 통보

구분		주민센터		학교·교육청
중지	⇒	① 중지 요청서 접수 ② 학교통보 ※ 중지는 학교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센터로 신청할 경우 학교로 공문 통보	⇒	③ (학교) 교육비 지원 중지 처리
신청취소		① 신청취소 요청서 접수 ② 조사중지(기각 또는 조사 종결 처리)		
철회		① 신청철회 요청서 접수 ② 교육청통보		③ (교육청)NEIS에서 신청관련 정보 삭제 ④ 철회 결과 학교에 통보

2. 접수

가. 신청 등록

- 읍·면·동 담당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행복e음에 등록하면서 신청일 입력
- 제출된 각종 서류는 행복e음에 스캔하여 등록
-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나.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일을 ‘신청일’로 함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정함
- ※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 지원
- * 단,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신청 당시 교육비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학교에 전송된 시점에 변경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준이 변경된 시점부터 지원 (예시: 2월에 교육비 지원 신청(지원기준 중위소득 52%) → 3월에 교육비 지원 기준 변동(지원기준 중위소득 60%) → 4월에 소득재산조사 결과 중위소득 54%인 경우, 3월부터 교육비 지원 시작)

3. 교육비 납부유예

가. 법정자격 대상자 '26년 교육비 납부 유예 (교육청·학교)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26년 심사 완료 시까지 교육비 납부 독촉 금지 및 CMS 계좌 인출 유예

*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명단 확인 가능

- 신입생 예비소집 시, 법정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교로 제출하면 교육비 납부유예됨을 학부모에 안내
 - 납부유예 신청은 입학 등록으로 간주
 - 납부유예 신청자 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적이 없는 자의 경우,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을 안내
 -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교육비를 납부해야 함을 학부모에게 별도 고지
 - ※ 고지 과정에서 학생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교육비 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교육비를 납부해야 함

Ⅱ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1. 보장의 단위

가. 개인단위 보장

- 교육비는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의 지원 여부 결정

나. 가구원의 범위

구분	가구원 범위
① 동일 주민등록	<원칙> ○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 포함 <예외> ○ 조부모 - 가정해체로 인해 학생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 조부모와 형제·자매 ※ 가정해체 : 이혼, 행방불명, 이민, 부모 사망 등 ○ 성인 학생(19세 이상)인 경우, 그 배우자
② 별도 주민등록	<원칙> ○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 포함 <예외> ○ 성인 학생(19세 이상)인 경우, 그 배우자

*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 외국인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지원대상 학생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되, 해당 학생 및 '나. 가구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국내 증빙서류로 가구원 확인이 곤란하므로 교육비 신청 불가(학교장 추천은 가능)

○ 가구원에서 제외 되는 경우

- 학생의 부(모)·형제(자매)가 군 복무중(의무 복무 한정)이거나 재소자인 경우
 - ※ 단,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가구원에 포함 (19세 이상 포함 여부 선택 가능)
-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 ※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단, 이혼숙려제는 이혼 취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구원 제외 불가)
- 행방불명된 부(모)
 - ※ 부모와 연락이 두절되고 학생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와 상담 후 행방불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서[서식11] 청구 후 행복e음에서 상담기록 기재
- 주민등록 거소불명인 부모, 형제·자매
- 사실혼 관계 가구원
- 성인인 학생인 경우, 그 부모와 자녀
- 재외국민*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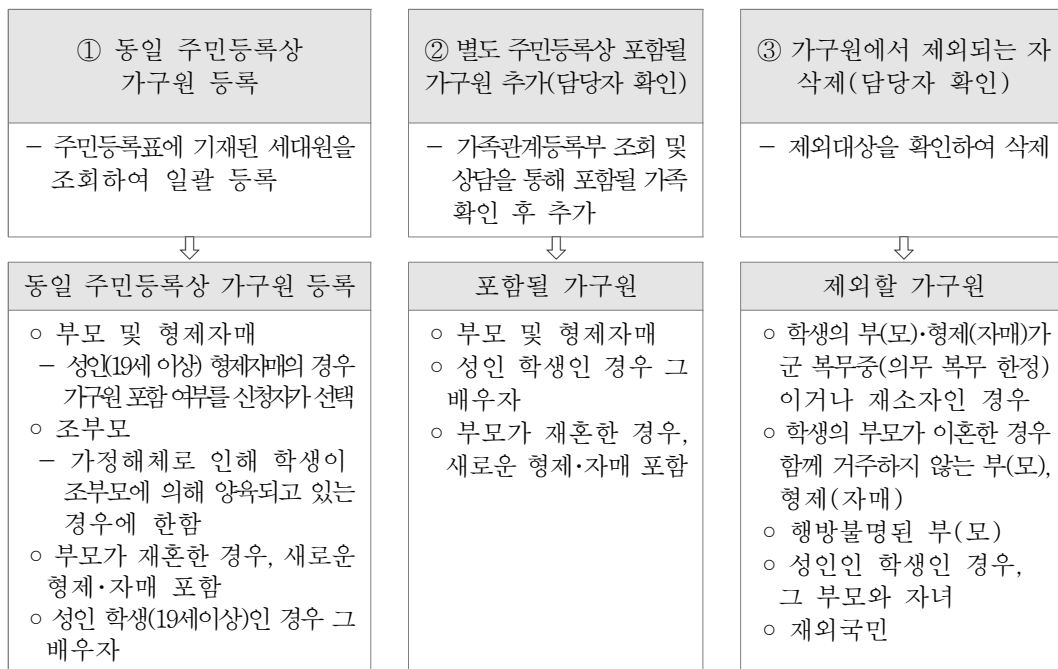
○ 단독 가구로 구성하는 경우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1인 단독 가구로 구성 (형제가 있더라도 각각 신청)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시설장이 대리 작성·제출
- 가정 폭력 등으로 모자 가정이 별도 시설에서 보호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 후 모자로만 가구원 구성
 - 이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서 작성 가능
- 신청일 이후 출생·입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은 미반영

다. 가구 범위 확정 절차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 추가
-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 보장가구의 관계는 학생을 기준으로 관계 입력

※ 가구 구성 처리 절차



2. 선정기준 및 교육비 지원 내용

가. 공통 기준

- 초·중·고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
 - 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경우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2·29여객기참사(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피해자인 학생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

지역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서울	법정, 60% 학교장	법정, 60%	법정, 80% 학교장	-	법정, 60%
부산	법정, 60%	-	법정, 90% 학교장	의료	법정, 학교장
대구	법정, 60% 학교장	-	법정, 80% 학교장	기초	법정, 학교장
인천	법정, 60% 학교장	-	법정, 90% 학교장	-	법정, 60%
광주	-	-	법정, 80% 학교장	주거	법정
대전	법정, 80% 학교장	-	법정, 80% 학교장	생계, 의료, 한부모, 차상위	법정
울산	법정, 60% 학교장	법정, 135%	법정, 80% 학교장, 다자녀	기초	법정
세종	-	기초	법정, 80% 학교장	기초	법정
경기	법정, 60% 학교장	법정, 60% 학교장	법정, 80% 학교장	의료	기초, 한부모
강원	법정, 80% 학교장	-	법정, 100% 학교장, 다자녀	의료, 한부모	법정
충북	-	-	법정, 80% 학교장, 다자녀	기초	법정
충남	법정, 70% 학교장, 다자녀	법정, 60% 학교장, 다자녀	법정, 100% 학교장, 다자녀	의료	법정
전북	법정, 68% 학교장, 다자녀	-	법정, 80% 학교장, 다자녀	기초, 한부모	법정
전남	법정, 60% 학교장	-	법정, 100% 학교장	법정	법정, 학교장
경북	법정, 68% 학교장, 다자녀	법정, 80% 학교장	법정, 80% 학교장, 다자녀	생계	법정, 60%
경남	-	-	법정, 80% 학교장	-	법정
제주	-	-	법정, 80% 학교장, 다자녀	기초	법정

- ※ 고교학비 및 급식비는 각각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제외 학교에 대한 지원 기준임
- ※ 법정은 '기초생활수급자(기초),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를 의미
- ※ '00%'는 기준 중위소득 00%이하 가구 학생을 의미
-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 기타 기준에서 학교장 추천은 '학교장'으로, 다자녀 가족 지원은 '다자녀'로 표시

○ 중위소득 기준 환산표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6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고시)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소득 인정 액	중위소득 50% 이하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중위소득 52% 이하	1,333,404	2,183,632	2,786,699	3,377,264	3,929,494	4,449,095
	중위소득 60% 이하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5,133,571
	중위소득 80% 이하	2,051,390	3,359,434	4,287,229	5,195,790	6,045,375	6,844,76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원)

- 국립학교는 소재지 시도교육청의 지원 기준을 준용
-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대상자라도 교육비 미신청시 미지원
- 자퇴, 퇴학한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인삶의질법, 댐건설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등을 지원받은 학생은 타 지역 학교 진학 시 반드시 신청 필요

나. 고교 학비

- 지원 내용
 - 입학금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학금 전액
 - * 고등학교 1학년 1분기에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 수업료 :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 * 단,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액 결정
 -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징수하는 경비 전액
 - * 입학금·수업료는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금액을 정하며,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자체적으로 금액 결정
- 지원 대상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 초·중·특수학교 학생은 의무교육, 고등학교 학생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학비 면제

○ 중복 지원 제한 사항(학교에서 확인)

－ 법령에 따라 고교 학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는 경우 중복 지원 제한

- (법정 면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북한이탈주민, 특수교육대상자 등은 고교 학비를 전액 면제 받으므로 중복 지원 제한

* (실제로 면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농어촌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자녀, 장애인 자녀, 의사상자 자녀, 공무원 (학비보조수당) 등은 고교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받으므로, 지원 받는 범위 내에서 중복 지원 제한

※ 예) 교육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 받으므로 중복 지원을 하지 않으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급여에서 지원받지 못하므로, 학교운영지원비만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

다. 급식비

○ 지원 내용 : 초·중·고교 학기 중 중식비 전액

○ 지원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 － 단, 무상급식 실시 학년 및 지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므로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님
- － 토·공휴일, 방학 중 급식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

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지원 내용 :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통상 연 60만원 내외(교재비, 재료비 등 포함)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금액 및 범위 상이

○ 지원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마.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 내용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 지원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 ※ 시도교육청별 지원 내용 및 대상이 일부 상이
- 지원 방법 : 인터넷통신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 학생 가구를 방문하여 설치
- 중복 지원 제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 지원 제한,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 시도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바. 학교장 추천 지원(교육청·학교)

1) 제도 개요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실시
 -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교사가 추천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각종 교육비 지원
 -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유의사항’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절차 진행

<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제도 개요 >

-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제2호
- ▶ 대상 : 소득·재산조사 결과 탈락하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 절차 : 보호자 면담(교육비 탈락 또는 신청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 확인) →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 학교장 추천비율*이 20% 초과하는 경우, 학교 별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지원하되, 다음과 같은 신취약계층을 추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비율을 25%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다.

-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 다자녀 가정 학생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 학교장 추천비율(%) = (지원항목 별 학교장 추천 지원학생 수 / 지원항목 별 교육비지원 선정학생 수) × 100

** 시도교육청 별로 관련 위원회 구성 등 승인절차를 마련하여 학교별 학교장 추천 지원의 적정 여부를 심사·결정

※ 참고

1. 지원항목 별 교육비 지원 선정학생 수 : 당해연도 5월 31일 기준
2. 지원항목 별 학교장 추천 지원 가능 학생수(예시)

지원항목	추천비율	선정학생수	학교장 추천 가능 학생수
A	15%이하	15명	2명
B	20%이하	15명	3명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예시

- 부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모의 이혼, 가계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갑작스런 실직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채권 압류 및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출·소득감소가 발생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 미등록 이주아동, 다자녀 가정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 육아기 근로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방과후 자유수강권만 해당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여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은 경우, 확인조사 대상자로 다음 학년도(진학 포함)에 교육비 지원 신청 없이도 행복e음 소득·재산 조사 후 교육비 지원 여부 결정
-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여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되며, 확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음 학년도(진학 포함)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거나, 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함

2) 학교장 추천 절차

- ① 교육비 지원 탈락자 또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자 중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면담
 -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의 정보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
- ② 담임교사 또는 업무 담당자가 보호자 동의하에 추천서 작성·제출
 - 학생 가정 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③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보호자의 근로 능력,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소득인정액은 참고자료로 활용
 -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 소득·재산이 없는 혈족을 부양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관
 - ※ 부득이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 학생 이름은 가명이나 기호로 처리
- ④ 학교장 추천 대상자 교육비 지원(나이스 처리 병행)
 - ※ 나이스 시스템에 등록된 학교장 추천자에 대한 정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에서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3)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자율)

- 학교장 추천 대상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교육비만 지원할 수 있음

※ 예) 입학금, 수업료만 지원하고 학교운영지원비는 미지원 등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수시 구제를 위하여 학교장 추천을 상·하반기로 분리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

4) 지원 기간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에서 해당 학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간 결정

※ 학교장 추천자가 관내 타 학교로 전출입시 전입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다시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학교는 학교장 추천 지원 결정시 이를 사전에 학부모에게 공지 필요

5) 지원 대상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고교 학비	○	-	○	○	-	○	○	-
급식비	-	-	-	-	-	-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	○	○	○	○	○	○
인터넷통신비	-	○	○	-		-	-	-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교 학비	○	○	-	○	○	○	○	-	-
급식비	○	-	-	○	-	-	○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	○	○	○	○	○	○	○
인터넷통신비	-	-	-	-	-	○	-	-	-

※ ○표시는 학교장 추천 지원 실시 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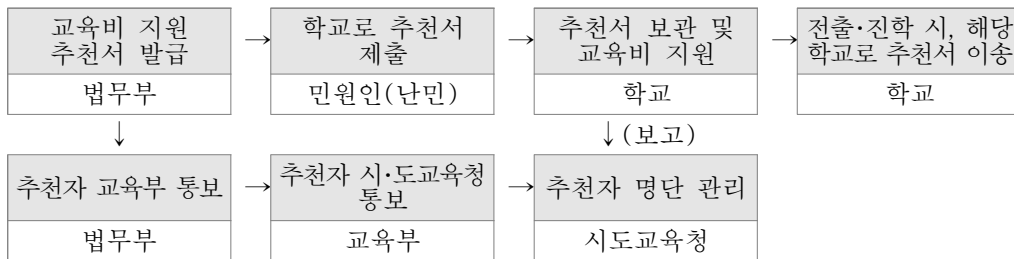
사. 난민 인정자 지원 및 특별기여자 지원(교육청·학교)

○ 제도 개요

- 지원 근거 : 「난민법」 제33조, 「난민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난민법 시행규칙」 제13조,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4조의2

- 지원 대상 :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인정자,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교육비 지원 항목 및 범위 : [붙임1] 참조(p70~86)

○ 운영 절차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인정자 지위의 계속 여부 확인 가능

아.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교육청)

○ 제도 개요

- 지원 근거 :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제16조(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12·29여객기참사(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피해자 중 초·중·고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 교육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도서구입비)를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학교
- 지원 내용 :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구입비
- 지원 기간 : 특별법 시행일('25.6.30.)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 신청 절차 : 피해자(보호자)가 피해자 확인서(국토부 발행)를 지참하여 학교 관할 시·도교육청에 개별 신청
 - ※ 국토교통부가 피해자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할 경우, 피해자(보호자)가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 대상으로 등록
 - ※ 타 시도로 전출·진학 시 피해자(보호자)는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재신청

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공개

-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학생 및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제3편

조 사

신청 및 소득·재산조사 업무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군·구(읍·면·동)에 위임됨에 따라, 제3편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가. 조사의 목적

-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 ※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법 제12조의2]

나. 일반원칙

- 자산조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은 변동 “발생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 단, 발생월의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월”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 해당 공적자료가 없거나 자진신고 이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의 경우에도 “발생월”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
 -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급여종류별 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급여종류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 변동사항의 처리 방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정수급 기간 및 금액은 부정수급 발생월부터 종료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보장기관의 귀책사유로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소급지급도 발생월부터 동일하게 적용함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된 소득·재산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지출실태 조사에 의한 소득확인’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

2. 조사의 종류

가. 신청조사

1) 조사의 목적

-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그 밖에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

2) 조사 대상 및 내용

- 지원을 신청한 수급권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행복e음을 통한 자료 변동 확인, 필요 자료의 제출요구 및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조사내용
 - (가)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조사대상여부
 - (나)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다)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라)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필요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3) 조사 시기

- 급여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4) 조사결과의 처리

- 지원종류별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내용 등을 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지
-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발견 시, 해당 지자체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동 거주지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미신고시설 운영자에게 시설 신고제도 및 신고시설 설치기준 등을 안내하되,
 - 미신고 시설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신고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4조 및 유형별 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시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하고,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벌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급권자에게는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를 유도하여 미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보장하지 않도록 관리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보장을 신청한 자의 보장 책임은 보장기관장에게 있으며, 수급자가 미신고 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법 제10조]”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실시하여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법 제1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 등으로 거주지 이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무연고 아동 및 장애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사본을 실종아동 전문 기관에 송부하되, 신상카드의 작성·제출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

5) 조사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부서
조사대상 확인	-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 신청서 확인 -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 요청	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자료 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	통합조사 담당
자료제출 요구	- 추가 자료제출 요구 - 조사 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통합조사 담당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파악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상담을 통해 소득출처 파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 항목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실시	
조사결과 처리	- 행복e음에 조회결과 반영 - 조사결과를 나이스에 전송 처리 - 금융재산까지 모두 반영한 조사 결과 전송	통합조사 담당

나. 확인조사

1) 조사의 목적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교육비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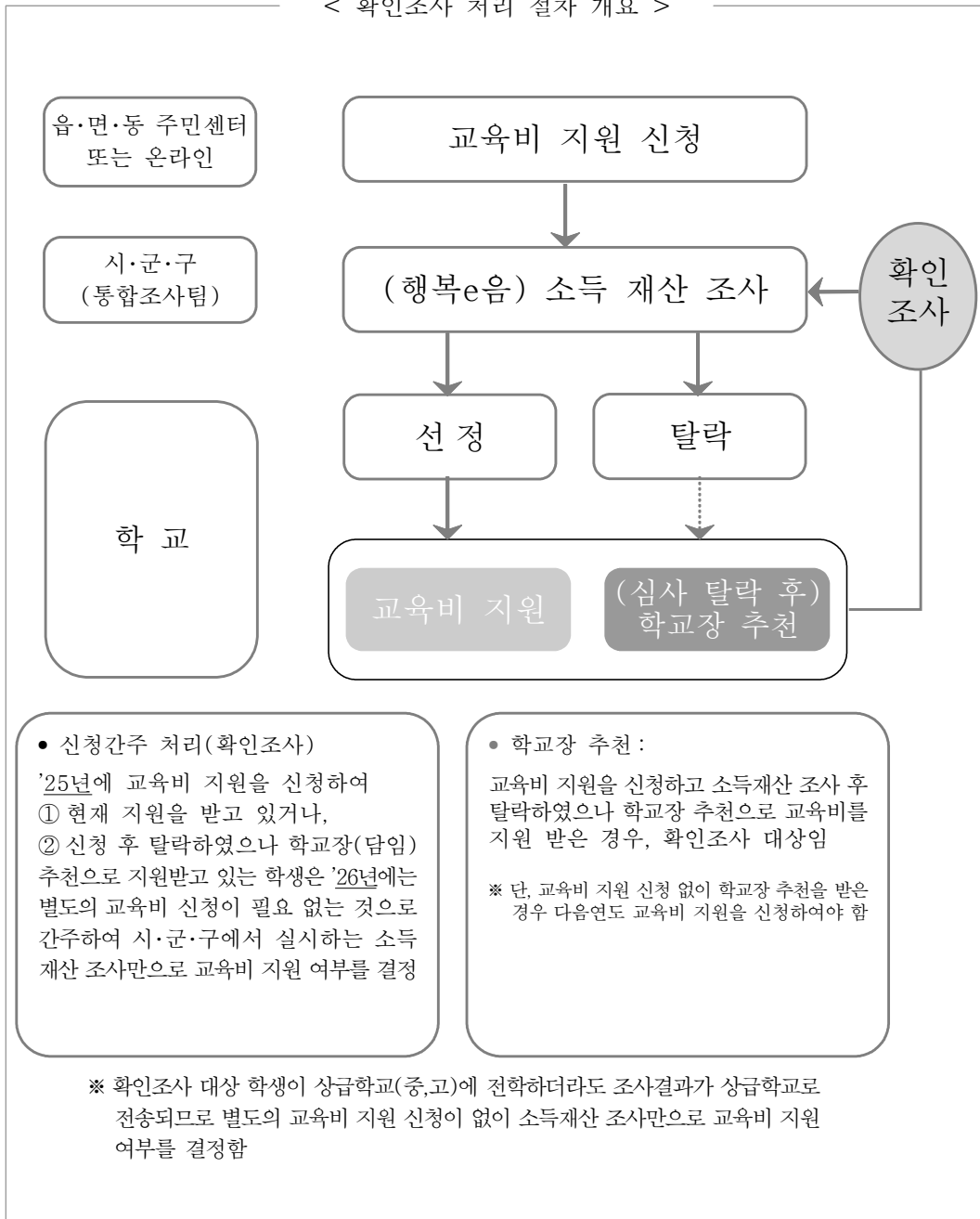
2) 조사의 대상 및 내용

- 수급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조사내용은 신청조사와 동일)

< 확인조사 >

- 확인조사 실시 대상
 - '25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 1종 이상을 계속해서 지원 받은 학생
 - ※ '24년에 교육비를 지원 받았으나, '25년에 교육비 지원 받지 못한 경우 '26년에 교육비 지원 신청 필요
 - '25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한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 추천으로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는 학생
- 확인조사 미실시
 - 고교 졸업생, '25년에 주민센터 신청 없이 학교장추천으로 지원 받은 학생, 학교에 교육비 지원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학교에서 나이스에 기재한 교육비 지원 여부를 바탕으로 확인조사 포함 여부 결정 ('25.10월까지 나이스로 교육비 지원 항목이 1가지 이상 선정으로 결재 완료된 학생)
 - 확인조사 대상자는 '25년도 신청서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규 신청 불요
 - ※ 확인조사 대상 학생이 상급학교(중,고)에 진학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상급 학교로 전송됨
 - ※ '26학년도 교육비 지원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를 학부모가 주민센터(행복e음) 또는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에서 '26.3월부터 확인 가능
 - * 교육비 신청대상 여부 조회 기간은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을 통해 별도 안내

< 확인조사 처리 절차 개요 >



3. 조사 제외 대상자

○ 타 제도에 의해 급여지원 자격이 결정된 경우 별도의 조사 없이 자료전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장애인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차상위자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및 그 가구원

※ 행복e음을 통해 저소득층 수급 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자격을 보유할 경우 소득·재산 조사 제외 처리

4. 자료제출 요구

- 행복e음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교육비 지원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행복e음이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 가능

< 제출서류 목록 >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 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
소득확인	○ 고용·임금확인서 ○ 월급명세서	○ 근로소득 파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 취업·퇴직사실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휴·폐업 확인서	○ 사업자 소득 파악 ※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 어종별 및 양식업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 어업 및 양식업 소득 파악
	○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 임업소득 파악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소득 파악(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 주거급여 대상 확인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파악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등	○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처리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소득과약 곤란 자에 대한 소득과약(특히,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인 경우 징구)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임대보증금 파악
부채	○ 법원 판결문 등, 화해·조정조서	○ 개인 간 사채 확인
	○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파악
근로능력 판정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 근로능력 판정
	○ 진로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급여계좌 확인	○ 통장사본	○ 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

* 주거용 이외 임대차 계약서는 전세권설정동기가 되었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징구

5. 조사수행 주체

1) 조사주체

- 보장기관의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수행
- 담당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현장조사서(서식10호)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 확인조사 시에는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나 읍·면·동, 시·군·구 공무원, 통·반·이장 등의 지원을 적극 활용

2) 조사의 의뢰

-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지원신청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공부상 자료로 조사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자영업자 등 상당한 소득이 예상됨에도 전산자료로는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 ① 소득·재산 전산조회나 지원신청자 면담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확인
- ② 부양의무자 등의 거주지에서 반드시 실제조사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하여 조사 의뢰함
- ③ 조사를 의뢰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조사의뢰 및 회신은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하여 수행

3) 조사의 위촉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연간조사 계획에 따른 확인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음

6.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 취소 또는 지원의 정지·중지를 할 수 있음
 -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상기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에게 동 사실 통보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도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해당함
 - ※ 단,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등의 사유가 명백하여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이 필요한 수급권자 여부를 조사·판단하기 이전에 신청 단계에서 자료 제출 미비를 사유로 신청·접수를 거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지원 정지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지기간을 정하여야 함
-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원실시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
 -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보

7.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가.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신청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추가 방문 최소화
-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확인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보장결정 시에도 누락서비스를 확인하여 안내)

나. 기타 행정사항

○ 개인정보의 보호

-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수급자 선정 및 지원결정 등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법 제22조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8조]

- [법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법 제23조의2제6항]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8조]

-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조사 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조사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민간 사회복지사, 보건소 등으로부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장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조사를 즉시 실시

Ⅱ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 조사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2. 실제소득의 범위

-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사적이전소득 제외
-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
 -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적 금품

3. 소득 산정기준 및 소득의 유형별 조사방법

(보건복지부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조)

Ⅲ

재산조사

1. 재산의 종류

가. 일반재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2호, 3호에 따른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 종중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 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6조제13조의2호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나.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다.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재산의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보건복지부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조)

3.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은 보건복지부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참조하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음

-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2) 임차보증금
- (3) 선박·항공기
- (4) 동산
- (5) 입목재산
- (6) 회원권
- (7) 조합원입주권
- (8) 분양권
- (9) 어업권 및 양식업권

나. 금융재산은 보건복지부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참조

다. 자동차

(1)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를 반영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국토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 취
득가액(*잔가율)
-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3) 조회결과 적용

-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차량 가액 전액을 가구원의 재산으로 산정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서 제외
 -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명의도용 등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 확인사항 :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류비 지출여부 등) 등

(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가)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자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자자동차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로써 1~3급 장애인 (상이등급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 배기량 2,500cc미만 차량
 - －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
 - － 2,500cc 이상의 개인택시
- 차령 6년 이상인 차량
- 이륜자동차 중 50cc이상 260cc 이하 차량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등)

(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3 적용되는 자동차

○ 적용대상

-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만 재산에서 제외 가능
- 명의도용 등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폐차 처리하였으나 교통범죄금·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말소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차증을 증빙서류로 제출 (폐차입고증 불가)
- 자동차 중개업자의 경우 자동차 등기부등본상 “상품용”이라고 등록된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

IV 소득인정액 산정

1.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월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 월4.17%/3 금융재산 : 월6.26%/3 승 용 차 : 월100%/3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 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참조

나. 부채는 보건복지부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참조

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환산율	월 4.17%/3	월 6.26%/3	월 100%/3

※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0조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며,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른 소득환산율 적용



제 4 편

심사 및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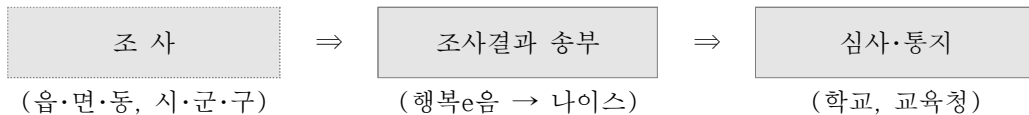


I

심사 및 통지

1. 개요

- 각 급 학교 및 교육청은 지침에 의한 기준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여부 및 교육비 지원 여부를 심사·통지함
- 보장결정 절차



2. 조사결과 송부

- 신청인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후, 행복e음에서 소득인정액을 나이스로 전송
 - 신청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조사 결과를 교육청(학교)로 제공하되,
 - '25년 교육비 지원자(확인조사자)의 조사 결과는 '26.4월 말까지 교육청(학교)으로 제공 예정
 - ※ 신청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학교 코드 오기제 등) 전송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자세한 심사 일정은 학교에서 결정
 -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나이스로 전송하였으나, 교육청(학교) 나이스 시스템에서 신청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시·군·구(통합조사팀)에서 직권으로 조사결과 재전송 가능
- 나이스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환산
 - 소득인정액에 따라 계산된 중위소득의 소수점 단위는 절사
(예 : 중위소득 60.9% → 60%)

3. 심사 및 통지

-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감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자 결정
 - '26.4~5월 중 집중 심사·통보 기간 운영 예정
 -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교육비를 한 번에 심사하거나, 각 교육비별로 심사 가능

< 교육비 심사 방법 안내 >

- 학비 면제자, 교육급여 수급자의 고교 학비 심사 안내
 - (국가유공자 등 학비면제자) 고교 학비가 면제되므로 탈락으로 심사 (사유 : 타 지원 학생)하되 심사결과 미통보
 - (교육급여 수급자)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으로 심사하고, 입학금·수업료는 탈락으로 처리하되 심사결과 미통보
 - ※ 입학금, 수업료는 교육급여로 지원
- 무상교육(고교학비), 무상급식,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 학교인 경우
 - 교육비 지원 내용이 아니므로 심사 대상이 아님 (나이스에서 심사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교육청에서 심사 제외 조치, 나이스 프로그램 매뉴얼 참고)
- 지원 기준에 해당하나 본인의 지원 중단 요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이스에서 아래 해당 사유를 선택하고 탈락으로 심사
 - ※ 재학생 아님(자퇴, 퇴학, 전출 등), 지원 거부, 기타(사유 직접 기재)
 - ※ 타 지원 학생의 경우 심사결과 미통보
- 지원 결정 후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자격이 변동된 경우, 교육비는 소득·재산 조사 시의 법정자격을 기준으로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므로 지원 결정 이후 자격 변동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 확인조사의 경우, 3월 말 법정자격을 기준으로 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
 - 학교는 나이스 전송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학부모는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조사 시 자료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가능
- 나이스 심사화면에서 학생자격과 가구자격이 다른 경우 학생에게 유리하게 심사
- 나이스에서 지원 대상자 결정 후 학생 개인별 교육비 지원 금액을 등록하여 수혜이력 관리
 - ※ 무상교육(고교학비), 무상급식,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지자체 지원 등 본 지침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학생'이 아닌 경우는 교육비 수혜이력 관리 대상에서 제외
 - ※ 교육급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이력을 중복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나이스로 심사 작업 진행 후, 학교장(또는 결재권자) 결재를 받아 심사 결과 확정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 개최 불필요

○ 나이스로 심사 결과 통보

- 각 교육비별로 심사결과를 신청인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통보
- 단, 학비 면제, 교육급여 등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는 심사결과를 미통보(학교운영지원비만 심사결과 통보)
-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 명확히 안내
- 오기재, 번호 변경 등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불일치를 고려해, 심사 결과 통보 전까지 나이스 내 휴대전화번호 점검 필요
- 통지 문안 ※ 학교에서 문안 수정 가능

< 소득·재산 기준 교육비 심사 >

○ 고교 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 홍길동 학생은 20xx년 교육비 신청 항목 중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등학교 - 연락처 xxx-xxxx-xxxx

○ 고교 학비 지원 대상자 탈락 시

- 홍길동 학생은 20xx년 교육비 신청 항목 중 고교 학비 지원 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학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 - 연락처 xxx-xxxx-xxxx

< 학교장 추천 심사 >

○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시

- 홍길동 학생은 20xx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 학교장추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고등학교 - 연락처 xxx-xxxx-xxxx

- 신청서에 교육정보화 관련 사항 오류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 해당 내용 (사용 통신사, 인터넷 가입자 성명 등) 확인 후 수정

○ 심사 기한 : 행복e음 조사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된 이후 30일 이내

- 나이스의 학생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에 오류가 있는 경우, 행복e음 조사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나이스 학생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기재될 수 있도록 관리(학교는 3월 중 나이스 학적정비 완료)

- 행복e음 조사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된 이후 나이스 학생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나이스의 학생 주민등록번호 수정 이후 심사 작업 진행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 학생 주민등록번호 수정

4. 학교장 추천

- 교육비 심사에서 탈락*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교사(업무담당자)가 추천
 -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에 대한 정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에서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학부모에 안내
 -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지원(나이스 처리 병행)
 -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의 수시 구제를 위하여 학교장 추천을 상·하반기로 분리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

5. 교육비 지원의 실시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정함
 - ※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 지원
 - * 단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신청 당시 교육비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학교에 전송된 시점에 변경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준이 변경된 시점부터 지원
(예시 : 2월에 교육비 지원 신청(지원기준 중위소득 52%) → 3월에 교육비 지원 기준 변동(지원기준 중위소득 60%) → 4월에 소득재산조사 결과 중위소득 54%인 경우, 3월부터 교육비 지원 시작)
- 타 시·도 소재 학교로 전출입 시,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기준에 따름

6. 교육비 지원의 중지(신청 취소·철회)

- 신청인이 교육비 신청을 취소(철회)하거나 교육비 지원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아래절차에 따라 처리

※ 향후 교육비 지원 희망 시, 다시 교육비 신청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

- 신규신청자와 신청간주자(확인조사 대상자)가 '26년 교육비 지원을 신청 취소(철회)를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취소(철회)를 요청
 - 신규신청자의 신청 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 주민센터는 행복e음에서 신청 기각 또는 조사 종결 처리
 - 신규신청자의 신청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되었거나, 신청간주자인 경우, 시·군·구·주민센터는 신청 취소(철회) 요청서를 접수하고 학교 및 교육청에 통보

구분	주민센터	학교·교육청
중지	① 중지 요청서 접수 ② 학교 통보 ※ 중지는 학교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센터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학교로 공문 통보	③ (학교) 교육비 지원 중지 처리
신청취소	① 신청취소 요청서 접수 ② 조사중지(기각 또는 조사종결 처리)	
철회	① 신청철회 요청서 접수 ② 교육청통보	③ (교육청)NEIS에서 신청관련 정보 삭제 ④ 철회 결과 학교에 통보

-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또는 지원 예정자가 학교에 지원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학교는 중지 요청서[서식9] 징구 후, 교육비 지원 중지 처리(나이스 처리 병행)
 - ※ 유선으로 요청하는 경우, 상담내용 기록으로 요청서 대체 가능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문 처리 시 반드시 비공개 설정
- 학생이 자퇴·퇴학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나이스-행복e음 연계를 통해 중지 이력 통보

- 휴학한 경우는 보장대상자 자격 유지 (교육비 지급만 중단)
- 자퇴·퇴학한 학생이 재입학을 하는 경우, 교육비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단, 학생이 사망한 경우는 행복e음에서 나이스로 지원 중지 자동 통보

7. 학교 변동사항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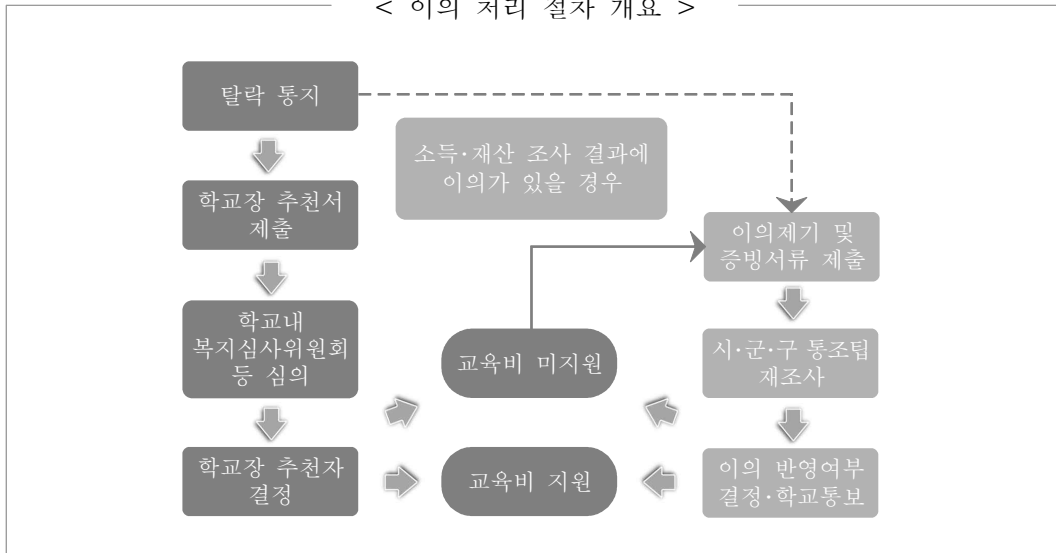
- 학교 업무 담당자는 학적 변동 등 각종 사항을 매달 갱신하여야 함
- 수시로 나이스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함
- ※ 시·도간 전출, 학적 비교 등

Ⅱ 이의신청

1. 개 요

- 교육비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가능
- － 단, 교육비 신청서 기재 사항, 소득·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

< 이의 처리 절차 개요 >



2. 이의신청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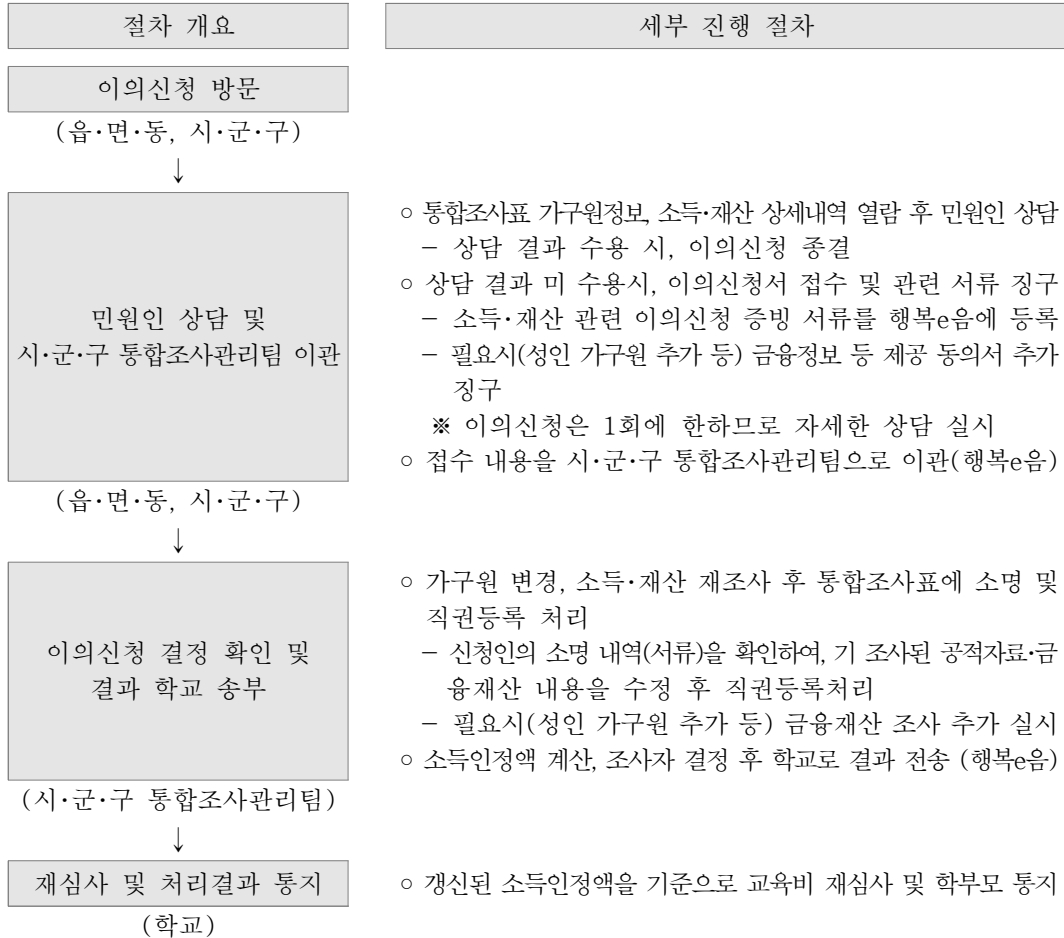
- 신청인 : 교육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집중 이의신청 기간은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
- 처리기관 : 학교 (또는 시·군·구청장)
- 신청대상 처분 :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처분
- 처리기한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3. 이의신청 절차

가. 이의신청 절차 개요

- 이의 신청자 학교 방문 (또는 담당자와 통화)
- 학교는 학교장 추천지원 의향을 확인한 후, 희망 시 학교장 추천 신청
 -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경우 이의 처리 종료
- 학교장 추천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관련 이의 신청 절차 안내
 - 소득·재산은 신청서 기재내용과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므로, 신청서 기재내용 또는 공적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조사 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
 - 이의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한 읍·면·동 사무소 방문 안내
 -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 민원이 없도록 자세한 상담 실시
 -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일 이전의 소득재산 변동사항만 인정
- 읍·면·동은 이의 신청 관련 상담을 수행하고, 이의 신청 접수 후 시·군·구 이관
- 시·군·구는 가구원, 소득·재산 재조사 후 재조사 결과를 나이스로 전송
- 학교에서는 재심사 후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
- 신청일 이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변동 등은 이의신청이 아닌, 교육비 지원 재신청이 필요함을 안내(단, 성인 가구원의 추가·제외는 이의신청으로 가능)

나. 지자체 이의신청 세부 절차



다. 주요 이의신청 사례

- 주택을 매매하여 현재 미보유중이나 보유중으로 조회되는 경우
 - 증빙서류(매매계약서) 징구 후, 주택 재산항목 감소 처리(기타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 소득·재산 신고서 금액과 공적자료가 이중으로 반영된 경우
 -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부분 삭제

- 성인 가족을 가구원으로 추가하거나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관계 확인 후, 반영
 - 다만 가구원 추가 시, 해당 가구원에 대해 공적자료, 금융재산 조회 실시

4. 이의신청 처분의 효력

-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지원 결정
 -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다른 교육정보화 지원자가 지원되는 시점부터 소급 지원하되, 신청일이 속하는 달이 다른 교육정보화 지원자에 지원되는 시점보다 늦은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지원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불복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5. 이의신청 서식

-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준용)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확인자료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확인자료(대리 신청의 경우)

Ⅲ 변동 및 사후관리

1. 개요

-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수급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수급자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 수급자의 가구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행복e음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관련 서류 등은 보관 관리

2. 변동사항 확인대상

- 수급자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 － 수급자 취업상태
 - － 수급자 소득·재산

3. 변동사항 확인방법

- 일반적인 확인 방법
 - － 수급자의 신고
 - －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 행복e음을 통한 확인
 - －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 (교정시설 입소, 군입대 등), 소득·재산 변동 등
- ※ 각 항목별 알림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행복e음으로 통보

<참고>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기

구분		변동 주기
인적사항	사망/말소	매일 변동사항 발생
	군입대 / 군제대	매월 변동사항 발생
	교정시설 입·퇴소	매월(2회) 변동사항 발생
전출입	가구전체	매일 변동사항 발생
	가구일부	매일 변동사항 발생

4.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 소득·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으로 통보(알림기능)
 - 거주지 또는 가구원 변동의 경우 행복e음에서 처리하나 자격은 변동 처리하지 않음
 - ※ 확인조사 시 별도 가구원변동을 처리하지 않기 위하여 전출입 등으로 인지된 시점에 인적변동 변동 반영 처리
-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보장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변동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은 중앙 전담기관에서 모니터링 실시

IV

보장비용의 징수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

-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가. 부정수급의 확인

(1) 부정수급의 정의

○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를 말함

- 이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교육비를 지원받게 한 자를 부정수급자로 지칭
- 따라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타 관계인(예를 들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음

※ 부정수급 예시 :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소득·재산이 있는 가구원을 누락시킨 경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재산을 누락시킨 경우 등

(2) 부정수급의 확인기관

○ 시·군·구청은 교육비 지원자의 부정수급임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 내용, 대상자, 실제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교육청(학교)으로 통보

* 교육비는 지원이 결정되면 이후 소득재산변동에 상관없이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므로, 교육비 신청 및 조사 시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부정수급 여부 판단

- 교육청(학교)은 지원자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에 부정수급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고, 시·군·구청은 재조사를 거쳐 확인된 부정수급 내용,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교육청(학교)에 통보

* 다른 시·군·구청에서 교육비 소득·재산 조사를 처리한 경우, 해당 시·군·구청으로 이송 후 교육청에 안내

나. 보장비용 징수결정

(1)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가) 징수기간 산정기준

- 교육청(학교)은 시·군·구청에서 통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교육비 항목의 지원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해당 학생의 교육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 선정 기준 초과로 교육비를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한 경우, 해당 항목을 신청 시부터 기산하여 보장 비용 징수

(2) 징수대상자 관리

- 교육청(학교)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다. 보장비용 징수 절차

(1) 보장비용 납부통지

- 보장기관이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문서로 납부 통지하여야 함
 -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통지서 및 고지서를(등기우편 등) 송부. 단,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로 가능
-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 및 전출 시에는 보장비용 납부 통지서 및 고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 단,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가능

(2) 분할납부

- 보장기관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
 - 분할 신청이 있는 경우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 분할 징수

(3) 독촉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라. 징수금액의 처리

- 징수한 보장비용은 시도교육청의 그 외 수입으로 처리

2. 정리보류

(1) 보장기관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수 있음

- (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다)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단, 정리보류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3. 소멸시효

- 보장비용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
 - 관련법 : 「국가재정법」 제96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민사상의 부당 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

4. 고발조치

[초·중등교육법 제67조(벌칙)]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부정수급기간이 1년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법 제67조에 따라 고발조치
 - 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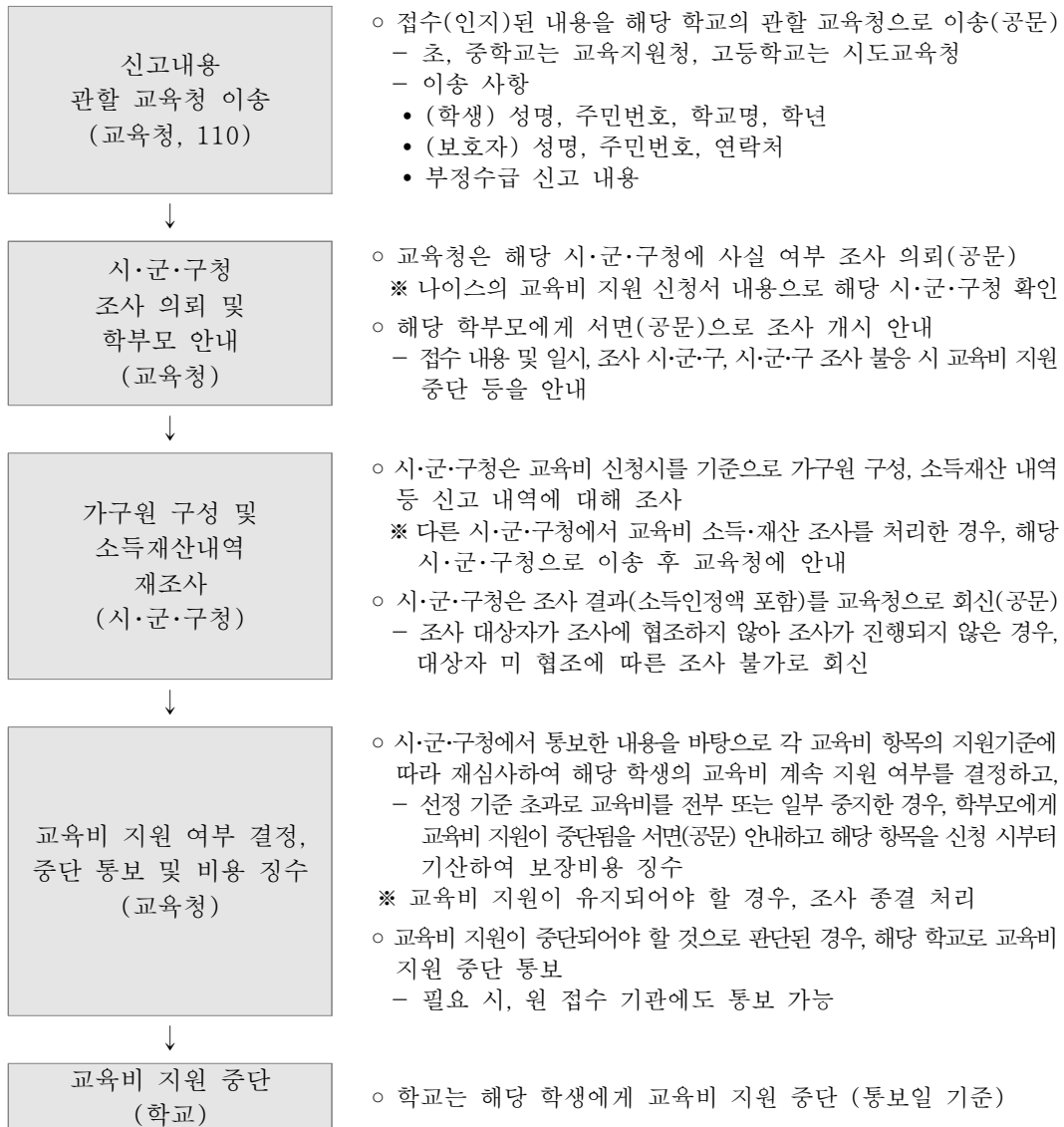
5. 부정수급 신고 처리 절차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8 및 제60조의11에 따라, 교육비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대상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부정 수급을 차단

< 처리 절차 >

절차 개요	세부 진행 절차
부정수급 신고 접수(인지) (교육청, 110)	○ 행정 기관에서 부정 수급 신고 접수(인지) - 신고인 인적 사항은 접수(인지) 기관에서만 보관





- ※ 지자체에서 부정수급을 인지한 경우, 해당 내용을 교육청으로 이송하고, 교육청 조사 요청에 협조
- ※ 부정 수급 신고자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 철저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문 처리 시 반드시 비공개 설정
- ※ 시·군·구청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8 제4항 및 제60조의11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중단 및 비용 징수
- ※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조사 대상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에 조사 사실 통보 금지(학교 신고, 인지 시는 예외)

V

개인정보 보호

1. 개 요

- 교육비 지원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 필요
- 업무 관련자가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 수행

2. 주요 노출 사례

< 주요 노출 사례 >

- A초 수학여행비 지원을 받은 학생 명단을 가정통신문에 기재하여 언론에 보도
- B초 야교장, 교육비 지원 학생만 대상으로 훈화 (주위 학생들에게 노출)
- C중·고 교육비 납입 고지서 및 납입 영수증으로 인한 정보 노출
 - 교육비 납입 고지서를 일반학생에게만 나눠주고 교육비 지원 학생에게는 나눠주지 않음
 -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일반학생에게만 나눠주고 교육비 지원 학생에게는 나눠주지 않음
 - 납입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된 고지서를 배부하여, 학생끼리 고지서를 비교하여 정보 노출
- D고 방과후 교육비 지원 대상 개인 상담이 외부 학생에 노출
- E고 교육비 지원 내역이 다른 학부모에게 노출
 - 학교 내 각종 회의에,(학생복지심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른 학부모가 참여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정보 노출
- F고 기초 수급자 관련 공문을 비 관계자에게 열람하여 정보 노출

3. 조치 사항

- 교직원 연수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소지 자체 점검·보완
- 각종 교육비 고지서 발급은 가정통신문 안내로 대체
- 법정 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심사 완료 시 까지 교육비 납부 독촉 금지 및 CMS 계좌 인출 유예함으로써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노출 차단
 - ※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명단 확인 가능
- 학부모가 자녀 모르게 신청한 사례, 교직원이 학생 가정의 경제사정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감 등을 고려하여 학생 지도에 주의하고, 해당 학생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업무 관련자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의거 최고 파면에 처해질 수 있음
 - 학부모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과의 관계 확인 후 안내 가능
 - ※ 학생에게는 정보 제공 금지
 - 교육비 지원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교직원(담임교사 포함)의 단순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
 - ※ 단, 학교장 추천 지원, 장학금 추천, 학생 생활지도 등 필요한 경우 학교장 승인 후 해당 목적을 위해서만 열람 가능



붙임

참고 자료



붙임 1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

※ 상세기준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

※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초·중·고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무상교육 무상급식 제외 학교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		○
	2					○		○
	3					○		○
	4					○		○
	5					○		○
	6					○		○
중	1					○		○
	2					○		○
	3					○		○
고	1	○	○	○	○	○		○
	2		○	○	○	○		○
	3		○	○	○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4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	60% 이하	80% 이하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6	난민인정자		○	○	○		○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		○
	2					○		○
	3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2		○	○		○		○
	3		○	○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의료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		9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6	난민인정자		○		○		
7	국가유공자 탈북·다문화가정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 대구광역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
	2		○	○		○	○	○
	3		○	○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		
7	사회통합전형대상자		○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9	특수교육대상자		○		○		
10	보훈, 북한이탈 교육보호 대상자		법정면제		○		
11	소년소녀가장, 난치병학생, 복지시설수용학생				○		

※ 군위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26학년도까지 경북교육청 기준 적용하되, 대구기준이 상회하는 경우 대구기준 적용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		○
	2					○		○
	3					○		○
	4					○		○
	5					○		○
	6					○		○
중	1					○		○
	2					○		○
	3					○		○
고	1	○	○	○		○		○
	2	-	○	○		○		○
	3	-	○	○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중위소득 기준 이하		60% 이하		90% 이하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6	난민 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		○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 광주광역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2					○		○
	3					○		○
고	1					○		○
	2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자			○	주거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낙찰차액 발생 시 추가지원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낙찰차액 발생 시 추가지원	○
4	중위소득 기준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6	난민인정자				○		

대전광역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		○
	2					○		○
	3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2		○	○		○		○
	3		○	○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생계,의료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4	중위소득 기준 이하		80%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6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		
7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		○		○		
8	소규모학교 재학생				○		
9	국가유공자 자녀		○		○		
10	육아기 단축근로 가정 자녀				○		

□ 울산광역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	○
	2		○	○	○	○		○
	3		○	○	○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4	중위소득 기준 이하		60% 이하	135%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6	난민 인정자		○	○	○	○	○
7	다자녀 가정				○		
8	보훈대상자		○		○		
9	다문화가정			○			
10	특수교육대상자		○	○			
11	육아기 단축근로 가정 자녀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2				○	○		○
	3				○	○		○

※ 급식비는 학기 중 석식비 지원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4	중위소득 기준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6	난민 인정자				○		

□ 경기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	○
	2		○	○	○	○		○
	3		○	○	○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의료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중위소득 기준 이하		60% 이하	60%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난민 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	○	○	○
7	탈북학생				○		
8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
	2		○	○		○		○
	3		○	○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의료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중위소득 기준 이하		80% 이하		10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6	난민 인정자		○		○		○
7	다자녀				○		
8	육아기 단축근로 가정 자녀				○		

□ 충청북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2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4	중위소득 기준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6	난민 인정자				○		
7	다자녀				○		

충청남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	○
	2		○	○	○	○		○
	3		○	○	○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의료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4	중위소득 기준 이하		70% 이하	60% 이하	10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난민 인정자		○	○	○		
7	다자녀		○	○	○		
8	보훈대상자 자녀				○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
	2		○	○		○		○
	3		○	○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중위소득 기준 이하		68%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6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		○		○
7	국가보훈대상자				○		
8	북한이탈주민 자녀						○
9	다자녀		○		○		
10	다문화		○		○		

□

전라남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
	2		○	○		○	○	○
	3		○	○		○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4	중위소득 기준 이하		60% 이하		10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난민 인정자		○		○	○	○

□ 경상북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		○
	2					○		○
	3					○		○
	4					○	○	○
	5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	○
	2		○	○	○	○		○
	3		○	○	○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생계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4	중위소득 기준 이하		68% 이하	80% 이하	85% 이하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다자녀		○		○		
7	난민 인정자		○		○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 가정 자녀				○		
9	소규모학교				○		

□

경상남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		○
	2					○		○
	3					○		○
	4					○		○
	5					○		○
	6					○		○
중	1					○		○
	2					○		○
	3					○		○
고	1					○		○
	2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4	중위소득 기준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6	난민인정자				○		
7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8	보훈대상자 자녀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초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중	1					○		○
	2					○		○
	3					○		○
고	1					○		○
	2					○	○	○
	3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SW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4	중위소득 기준 이하				80% 이하		
5	학교장 추천				○		
6	난민 인정자				○		
7	다자녀				○		

붙임 2

교육비 신청 관련 서식

-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
-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서식 4호] 복지대사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서식 5호]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 [서식 6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 [서식 7호] 이의신청서
- [서식 8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별도서식 1호] 교육급여 교육비 중지 요청서
- [별도서식 2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서
- [별도서식 3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연락두절 가구원 확인서
- [별도서식 4호]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 ¹⁾ :	휴대전화 ²⁾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1. 배우자 관계 ³⁾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 ⁴⁾ : 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 ⁵⁾ :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 ⁶⁾ : _____, _____									

부양의 무자 ⁷⁾	수급권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작성방법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모두 기재
- 2) 원활한 결과 통지를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3), 4) 해당자에 한함
- 5), 6)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 7)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8) 동일보장기구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다림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 ⁹⁾ ☐ 기타 ¹⁰⁾	
기초생활보장	☐ 교육급여 (바우처 제공)	※ 유의사항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로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보장결정된 이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을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 부모모듬(현금) (대상자 이름 :)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중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 · 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교과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인터넷통신사 :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노인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애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 ¹⁰⁾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 전기요금		☐ TV수신료 면제	
	☐ 지역난방요금		☐ 도시가스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 ☐ KT ☐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가족사항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과 중증고 교육복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공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4쪽 중 3쪽)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 의 (√ 체크)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u>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의 유선전화사업자</u>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u>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u>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u>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액번호</u>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u>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u>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아래 선택적 동의 항목은 각각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항목 미동의시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2.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3.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한 것에 동의합니다.	[]
부모급여	4.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장애인연금	5. 장애인연급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서비스연계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8.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복지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유의사항		확 인 (√ 체크)
공통	1.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하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특수목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복지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금융 등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마우처 안내 및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에너지마우처 담당부서(산업부서 등)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7.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8.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복지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는 「사회복지급여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거부 의사가 없으면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 「사회복지급여법」 시행규칙 제22조의제2항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¹²⁾ 성명 :
(배우자 동시 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9)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10)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4쪽 중 4쪽)

안 내 사 항

신청기간	-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인 경우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신청하여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부모급여(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계법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류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¹³⁾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통장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명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거급여 임차수급권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자산형성)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 ¹⁾									
소득 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²⁾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 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마리, 원	분양권	원					
		□ 돼지(마리, 원	조합원	원					
		□ 기타가축(마리, 원	입주권	원					
		□ 종묘(원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 ³⁾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의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⁴⁾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앞쪽)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³⁾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간접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 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가능성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및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인양육 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4호]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 신청서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자 격 구 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전기요금		☐ TV수신료 면제		☐ 휴대전화요금	
			☐ 지역난방요금		☐ 도시가스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시내·외유선전화(계약자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자 : ☐ KT ☐ SK 브로드밴드 ☐ LG 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요금 감면 및 복지자
원 연계를 (대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
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및 복지지원 연계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 복지대상자 요금감면을 받을 경우, 자격변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금감면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5호] 사회보장급여관련[결정(적합)/결정(대상제외)/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5쪽 중 1쪽)

사회보장급여 []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생계·의료·주거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군·구청장이, 교육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각각 통지
-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정지), 변경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입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임치 연체 등
 - 변경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임대차 계약조건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급여감소 :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경우 등
 -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자는 적합통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로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카드 포인트가 배정(개별 문자 안내)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가 배정된 지급 학년도 이후 다음 학년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회수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유종사행 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 등을 제외한 교육활동 수강,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및 신청 여부, 사용처, 결재환불취소 절차, 사용 기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 한부모가족 ([] 급여지급, [] 증명서 발급)-[] 장애인복지 [] 기타()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인복지(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증명서(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고 72%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자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0, 1세의 경우 부모급여(현금)를 대신하여 부모급여(보육료)를 수급합니다. 부모급여(현금)과 부모급여(보육료)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육료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부모급여(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수급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급여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가정양육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3.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이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연장보육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입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가정양육수당 수급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의 경우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해당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직권으로 기본보육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장애인연금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장애인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 인				
배우자				

-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장애정도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 :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명	기초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원		
배우자		원		

* 이 금액은 예상연금액으로 실지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상실, 변경되거나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 : 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7.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8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아동수당 급여액 및 지급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개별 생명 전체 명시					

3.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 출생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신청 시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단,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찾기 위한 법원 절차 진행, 미혼부의 자녀로 법원에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 전제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여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60일 기간 산정시 제외)
4.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해외출생 아동은 출생일을 출국일로 보고 국외 체류기간 산정)에는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법」 제15조(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수급아동 연령 초과 등
 - 변경 : 보호자의 변경, 지급계좌 변경, 기타 정지사유 발생·소멸, 수급아동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복수국적), 보호자의 이혼 등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
 - 정지 : 행방불명·실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실종신고가 진행 중인 자,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지기간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조치).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아동수당법」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8. 아동수당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 보호비 / 기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부담금납부계좌		이용권 유효기간		지원내역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경우

활동지원등급	등급		종합점수	점	
			영역별 점수	일상생활·인지행동(X1)	점
				사회활동(X2)	점
				가구·주거특성(X3)	점
결정 급여	[] 활동지원급여 [] 특별지원급여 []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월	원	활동지원급여	월	원
			특별지원급여	월	원
			긴급활동지원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효기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수급자인 경우

이용 서비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서비스이용시간	[] 시간
급여개시일	
유효기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자인 경우

이용서비스	[] 기본돌봄 서비스
	[] 방문목욕 서비스

2.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안내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희망e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카드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으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기타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 계좌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서만 산정되고, 특별지원급여에서는 면제됩니다. 또한 긴급활동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됩니다.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전까지 일시금으로 본인부담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가 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여성청소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생리대)을 국민행복카드(신청서 상의 신청인, 청소년 본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대상자 결정·통보받은 후 선택한 제공기관의 지정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바우처 발급 후 제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간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본 돌봄서비스 최대 72시간 및 방문목욕 서비스는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서비스 이용 가능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5. 정보공개 청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이의신청) 및 영역별 점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활동서비스·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는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연속하여 1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사업은 1인당 12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회(12개월) 연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해당 시·군·구에 연장을 요청해야 하며, 지원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 이용자 신고내용, 행정기관 확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차상위계층 등 보유자격의 상실, 영아의 사망, 연락처 변경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또는 부가 서비스 수혜 여부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청소년의 사망, 수급자 자격 변동 등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생리대 등 생리용품을,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함께 구매할 경우 각각 나누어 별도 결제하여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는 연속하여 6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연속하여 3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단,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제외)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생활비용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출 항 목	금 액(원)
합 계	
학 자 금	
전 기 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기 타	

3. 제출된 지출서류를 심사한 후 60만원 ~ 100만원 한도로 귀하께서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0.1세의 경우 부모급여(현금)를 대신하여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현금)과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수급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급여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서비스유형	지원유형	보장기간/지원시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초과, 여성가족부 및 시도·시군구가 규정한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타법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유형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께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진료 후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상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음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0개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및 10개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질환을 모두 합하여 연간 365일
- 5.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6.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 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차상위 계층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생년월일

2.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 아동은 수급권 상실·정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상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난민인정 취소 등

- 정지 :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등

※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 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단,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변경 :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등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됩니다.

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5년)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지원되며, 귀하의 의료비 지원시작일과 지원종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호종료일	지원시작일	지원종료일

※ 단, 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로서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원 결정하는 경우 18세가 된 날로부터 60개월(5년)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지원됩니다.

※ 단,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재보호조치 기간 동안 의료비지원은 중지됩니다. 재보호조치 종료 이후에는 보호조치 종료 이후, 자립지원이 제공되는 5년의 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은 지원시작일부터 지원종료일까지의 지원기간 중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으로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단, 지원기간 중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지원기간 중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적용
 - 지원기간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수급자가 된 날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적용 제외
4.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의 범위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며,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모두 적용됩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지원 제외) 약국은 병·의원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적용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외에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귀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부모급여(현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부모급여(현금)	

2. 부모급여(현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3. 부모급여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 의해 해당 기간동안 부모급여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부모급여를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법」 제15조(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중지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 변경 : 보호자의 변경, 서비스 변경, 지급계좌 변경, 기타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행방불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실종선고가 진행 중인 자, 해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자격변경 시 반드시 자격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은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차액지원 및 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소급 지원은 가능).
6.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부모급여(현금) 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부모급여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부모급여(현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만2세 연령 도래에 따라 **부모급여(현금) 자격이 중지되고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자로 자격이 자동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부모급여(현금)	
			가정양육수당	

- 귀하가 사전에 신청하신 부모급여(현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23개월에 속하는 달까지 소급하여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일시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 또한, 결정 당시 아동의 만 2세 연령 도래에 따라 부모급여 자격은 자동 중지되며, 가정양육수당으로 별도 신청없이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서비스 변경이용 시 반드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자격신청 누락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이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연장보육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입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가정양육수당 수급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귀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지급 예정 첫만남이용권 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우처 지급>

보호자		지급대상자			이용권 유효기간	이용권 지급금액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신청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기재					

<현금지급>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금융기관	계좌번호	지급금액	입금일	비고

3. 첫만남이용권 발급 안내

- 첫만남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의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예외적인 경우(시설보호아동 등) 첫만남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우리카드,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KB카드(KB카드, 전북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궁금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등록된 1개 카드에만 바우처 이용권(포인트)을 지급, 생성합니다.(생성 후 이용가능)
- 첫만남이용권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유흥업소·사행업소 및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매금액이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미사용 이용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사용기간 종료 후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사용된 결제건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된 이용권 금액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타 바우처(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를 동시에 받으시는 경우 타 바우처 이용권이 우선 차감되며,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결제하여야 합니다.

☞ 중복수혜 대상자 결제 유형별 예시

- 사례 1 : 판매점에서 기저귀(또는 타 바우처) 2만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잔액 1만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1만원 차감 후, 초과 분 1만원 개인부담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 2만원 차감(초과 분 개인부담)
- 사례 2 : 판매점에서 기저귀(또는 타 바우처) 2만원과 생필품 1만원 동시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잔액 2만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2만원 차감 후, 생필품 1만원은 개인부담
 - ※ 기저귀 2만원, 생필품 1만원을 각각 결제하는 경우 생필품 1만원은 첫만남이용권에서 차감 가능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으로 기저귀, 생필품 3만원 차감(초과 분 개인부담)
- 사례 3 : 판매점에서 생필품 3만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유무에 관계 없이 첫만남이용권으로 생필품 3만원 차감(초과분 개인부담)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준수사항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바, 만드시 이러한 목적하에 이용권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6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수급자 (보호대상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소재지)			
비용(부당이득) 납부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수급자·보호 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	[] 부양의무자	[] 기타()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환수(반환) 사유				
환수결정액	원	납부장소		
기 납부액	원			
납부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및 제47조, 「아동복지법」 제61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및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2, 「의료급여법」 제23조, 「두려움장애」 제20조, 「아동수당법」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에 따라 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안내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
 -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 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서식 7호]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처 분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 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안내사항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8]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이의 신청일		
처 분 내 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결정 결과	[] 처분 취소·변경 [] 기각 [] 각하	
이의신청 결정 사유	<별지 작성 가능>	

-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에 따라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소속)

(성명)

문의전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도지사

직인

참고 사항	· 기각 :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 각하 :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	---

[별도서식 1호] 교육급여·교육비 중지 요청서

교육급여 () / 교육비 () 중지 요청서

신청인	성명	학생과의 관계		
	주소		연락처	

대상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년	반
------	----	------	----	---

확 인 사 항

<지원항목>

■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

■

☐

교육비 : ☐ 고교학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급식비, ☐ 교육정보화비, ☐ 기타 교육비()

1. 해당 중지 요청은 학생 본인, 부모와 형제 등 가구원이 가능합니다.

2. 교육급여와 교육비 일부 항목 중지를 요청한 학생이 다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로 신청하시면 다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항목 중지를 요청한 학생이 다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본인)은 상기 확인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대상학생(본인의 _____)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지 않으므로 지원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00 학교장 귀하 / 00읍면동장 귀하

붙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11

[별도서식 2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처/담당자	접수일	
요청인 ※ 학생의 보호자만 가능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학생과의 관계	
대상 학생 ※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을 모두 기재	1	성명	주민번호
		현재 다니는 학교	
	2	성명	주민번호
		현재 다니는 학교	
	3	성명	주민번호
		현재 다니는 학교	
확 인 사 항			
1.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만 가능 합니다. 2.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신청취소(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을 모두 기재 합니다. 3.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학교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에게는 4대 교육비 (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비) 모두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5.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이 다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 해야 합니다.			
신청인(본인)은 상기 확인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대상학생(본인의 ____)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지 않으므로 _____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을 취소(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도서식 3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연락두절 가구원 확인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연락두절 가구원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처/담당자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학생과의 관계	
학생	1	성명	주민번호
		현재 다니는 학교	학년
	2	성명	주민번호
		현재 다니는 학교	학년
	3	성명	주민번호
		현재 다니는 학교	학년
연락두절 가구원	성명	주민번호	
			※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주소 ※ 주소 불명시 생략	신청인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제외 요청 사유			
상기인은 신청인 및 학생과 ____년 ____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____년 ____월 이후 학생의 양육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			
신청인(본인)은 상기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한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비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의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도서식 4호]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대상 학생	1	성명	학교명	학년
	2	성명	학교명	학년
	3	성명	학교명	학년

확인사항

1. 지원대상 학생의 형제·자매 등이 교육청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PC 및 인터넷 통신비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 폭력성 오락, 음란물, 채팅 등 비교육적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3. 교육청 또는 학교 담당자가 해당 가정의 컴퓨터 또는 인터넷 사용 실태를 확인하거나, 유해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컴퓨터와 인터넷의 교육적 사용을 위해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주소 이전, 전화번호 변경, 인터넷 가입자명, 아이디, 통신사 변경 등 인터넷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담당자와 사전협의하거나 즉시 통보하겠으며, 미 통보 시 통신비 지급 누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시·도 별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 동안 통신사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컴퓨터를 지원 받은 경우 담당 기관의 허락 없이 양도 또는 매각하지 않겠습니다(컴퓨터를 지원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

※ 위의 동의하신 내용은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으시는 동안 계속 유효하므로 별도의 안내가 없는 한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_____ (서명, 인)
 (학생과의 관계: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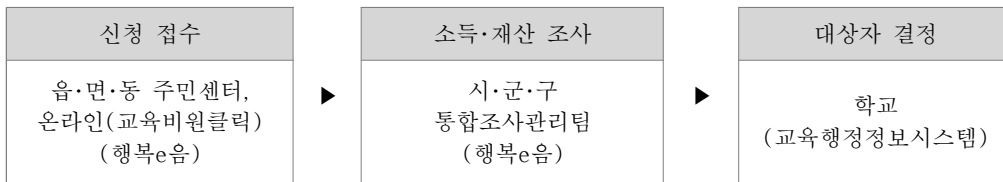
시·도교육감 귀하

붙임 3 교육급여 사업과의 관계

□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의 관계

○ 공통점

- (사업 목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용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도모
- (지원 절차) 학부모 등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학교에서 지원 결정



○ 차이점 : 법적 성격, 지원 기준, 지원 항목 등 차이 존재

구분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초·중등교육법
법적성격	권리성 급여	재량적 예산사업
지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청 자율(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신청시기	상시 신청	
소득재산조사 방식	기초생활보장제도 동일	교육비 자체 방식
지원항목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 수업료를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2026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발행일 2026년 2월

발행처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지침과 관련된 질의는 (국번없이) 1544-9654

“교육비 지원 콜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매품》

